

조례안예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74호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임산부와 아동 및 동반 가정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 장벽을 낮추고자 함.
- 양육가정의 여가·문화 향유권을 보장하여 도시 차원의 ‘아이 키우

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우선입장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우선입장제도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우선입장제도의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우선입장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
----------	----

발의연월일: 2026. 10. 15.

발 의 의 원: 성보빈 · 곽은정 · 구점득 · 권순재 · 김수민
김인애 · 박연정 · 박영주 · 변보미 · 심임숙
이원주 · 이정희 · 전태완 · 정은미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임산부와 아동 및 동반 가정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 장벽을 낮추고자 함.
- 양육가정의 여가·문화 향유권을 보장하여 도시 차원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우선입장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우선입장제도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우선입장제도의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우선입장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임산부와 아동의 축제 및 각종 행사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아동의 우선 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 및 아동 동반 가정의 참여 편의를 높이고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우선입장제도”란 임산부, 아동 및 임산부나 아동을 동반한 가족 또는 보호자를 우선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축제등”이란 창원시 또는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를 말한다.

제3조(우선입장제도의 시행 및 운영) ① 시장은 축제등에서 입장을 위한 기다림이 예측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등에 발권 또는 예매 절차가 있는 경우 임산부 및 아동이

우선하여 발권하거나 예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확인을 마친 즉시 돌려줘야 한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

2. 아동: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중 하나

3. 가족 또는 보호자 : 임산부 또는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시장은 행사장의 수용인원, 안전관리, 예매 여부, 좌석 현황 등 축제등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입장제도의 적용 및 세부 추진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우선 입장을 위한 입구를 일반 입장의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등의 장소 입구에 우선 입장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우선입장제도의 권고 및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축제등에 대하여 그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우선입장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6. 23.>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도·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6. 23.>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도·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6. 23.>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과.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